

#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

1994년 12월 31일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영은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소속기관) ① 통상산업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 소속하에 수출자유지역 관리소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 제2장 통상산업부

제 3조(직무) 통상산업부는 통상·상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신탄을 제외한다)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조(하부조직) ① 통상산업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 통상산업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전산통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 통상산업부에 총무과·통상무역실·자원정책실·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 및 생활공업국을 둔다.

④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둔다.

제 5조(공무원의 정원) 통상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6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 상당 또는 3급 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공보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제 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고, 감사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 8조(비상계획관) ①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고, 비상계획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제 9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물품의 구매·조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조 및 관리
  8. 도서의 보관·관리, 간행물 및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대여 및 공여
  9.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 10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기업 규제심의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전산통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상·산업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계업무의 총괄
  4. 당정협의·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총리실 관계업무의 총괄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보고통제 및 관리
  5.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지침의 수립·총괄
  6.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산업계의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장관협의회 안건의 정리
- ⑥ 전산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통상·산업행정 전산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무역·에너지 및 자원 등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의 관리
  3. 통상산업부 전자계산조직의 운용 및 업무개발
  4.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산 및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5. 통상산업부와 산하단체 전산화계획의 평가·조정
  6. 전산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통상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 ⑦ 기업규제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2. 기업활동규제완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4. 기업활동에 관한 인·허가등의 통합고시에 관한 사항
  5. 기업활동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업활동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업활동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업활동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분석
  9. 외국의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 제 11조(통상무역실) ① 통상무역실에 통상정책과·무역정책과·수출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두고, 실장 밑에 통상무역심의관 3인과 세계무역기구담당관·다자협상담당관·지역협력담당관·미주통상담당관·아주통상1담당관·아주통상2담당관·아중동통상담당관·구주통상담당관·구주통상담당관 및 국제기업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통상무역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통상정책과장·무역정책과장·수출과장·수입과장과 세계무

역기구담당관·다자협상담당관·지역협력담당관·미주통상담당관·아주통상1담당관·아주통상2담당관·이중동통상담당관 및 구주통상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무역협력과장 및 국제기업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국제통상기구에 관한 사항
3. 국제 통상환경의 조사·분석 통상정보 및 통상홍보에 관한 사항
4. 민간통상 활동의 지원
5. 해외주재 상무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대한무역진흥공사와의 업무협조
7.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역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기타 무역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수립·추진
2. 수출보험제도의 운용 및 수출보험정책의 수립·추진
3. 무역관계 법령의 입안·운용
4. 산업설비 수출의 촉진, 중·장기연불등 수출금융, 외국환관리,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된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무역업무의 자동화 및 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업제도의 운영 및 분쟁에 관한 사항
7. 한국무역협회·한국수출보험공사 및 대한상사증재단과의 업무협조

⑤ 수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수출전망, 수출동향의 조사·분석 및 통계관리
2.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 및 수출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관련 전시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종합무역상사 및 중견 수출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반특혜관세의 수혜 및 수출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사항
6. 수출조합 및 양국간 협정에 의한 수출제도의 운용

⑥ 수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통합공고, 수출입 별도공고(중고품 수입),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공고 및 운용

4. 무역대리업제도의 운용
5. 수입추천제도의 운용
6.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유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의 운용·발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수입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⑦ 무역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간의 물자교역 및 자원관련 대북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대북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및 수입관리제도의 운용
5.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에 따른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계무역등 특정거래에 관한 사항

⑧ 각 통상무역심사관은 통상무역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⑨ 세계무역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의 통상협력
2.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통상협상
3.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
4. 세계무역기구하의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5. 국제무역규범 및 제도의 조사·분석
6.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⑩ 다자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통상협력
2. 산업별 통상협력
3. 복수국가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통상산업부 소관업무의 대외 교섭
5. 새로운 국제무역 의제의 논의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력
6. 기타 무역과 관련된 다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⑪ 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지역경제통합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3. 지역경제통합기구와의 통상협력
4. 지역경제통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외국과의 협력
5. 개발도상국가와의 공통적인 통상협력 및 산업기술협력
6. 기타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경제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⑫ 미주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간 통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미주지역(미국·캐나다·멕시코 및 중남미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추진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4. 미주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5. 미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6. 미주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⑬ 아주통상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아주 1지역(일본·동남아시아 및 대양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아주 1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아주 1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아주 1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주 1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⑭ 아주통상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아주 2지역(중국·홍콩·대만 및 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아주 2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아주 2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아주 2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주 2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⑮ 아중동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아중동지역(서남아시아·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아중동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⑯ 구주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구주지역(서구·동구 및 독립국가연합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정책의 수립·추진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3.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4.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5. 구주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지원

⑰ 국제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업의 국제화·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대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 및 차관도입과 관련된 관계부처와의 협조·지원
4. 국가간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관계부처와의 협조·지원
5. 통상 및 투자사절단의 파견에 관한 사항
6. 외국기업의 애로상담 및 처리
7. 대전엑스포기념재단과의 업무협조

제 12조(자원정책실) ① 자원정책실에 자원정책과·자원협력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기술과·석유정책과·석유수급과·가스기획과·가스관리과·전력정책과·전원개발과·원자력발전과·광업진흥과 및 석탄산업과를 두고, 실장 밑에 자원정책심의관 3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전원개발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전원개발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각 자원정책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용·관리
4.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소비실태의 분석
5. 에너지 자원산업의 자율화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지원
7. 에너지부문의 환경관련 다자간 국제협력 업무 및 그 후속조치
8. 대 북한 에너지 및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에너지 및 자원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살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자원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추진
2. 국내 대륙붕의 석유·가스 및 해외지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3. 에너지·지하자원 개발사업의 지원
4. 해양광물·심해저 및 남극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지원
5. 다자간 에너지·자원협력에의 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6. 자원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쌍무적 국제자원협력
7. 석유·가스개발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확정 및 조광권의 설정 허가
8. 국제해양법협약등 해양·심해저 광물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9.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운용
- ⑤ 에너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2. 부문별 에너지소비절약 종합시책 및 홍보대책의 수립·추진
3.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 지역 냉·난방 공급계획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추진
5.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이용효율 기준제도 및 등급표시제도의 운용
7.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운용
- ⑥ 에너지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장·단기 기술개발정책의 수립·추진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술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3.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4. 에너지소비절약기술의 연구개발
5.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6. 에너지 및 자원부문의 기술수요 조사
7. 대체에너지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 추진
8.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폐기물 이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의 운용
- ⑦ 석유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4.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6. 원유의 도입 및 수출입 등 원유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7.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석유시장 정보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한국석유개발공사와의 업무협조
10. 석유사업법의 운용
- ⑧ 석유수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추진
2. 석유제품의 생산·수급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3. 석유제품의 유통·판매·소비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4. 석유제품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9. 송유관사업법의 운용
- ⑨ 가스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용
2. 천연가스 전국공급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용
3. 도시가스·천연가스의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4. 도시가스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가스사업에 관한 차관·합작투자·국제협력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가스 이용분야의 확대 및 기술개발
7.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조

8.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용

⑩ 가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획 및 비축계획의 수립·운용
2. 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운용
4.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체제 개선 및 기술개발
5.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에 관한 사항
6.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협조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운용

⑪ 전력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전기요금의 조정 및 전기공급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4. 전력에 관한 기술개발정책의 수립·추진
5. 전력사업의 국제협력 지원
6. 민간발전사업의 지원
7. 비상시의 전력수급대책
8.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의 운용
9. 한국전력공사와의 업무협조

⑫ 전원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원입지정책의 수립·추진 및 홍보
2.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4. 수력·화력발전소와 송전·변전·배전시설의 건설·운영의 지원
5. 농어촌 전화사업의 지원
6. 전기안전관리 및 재해대책과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
7. 소수력·조력 등 대체에너지 발전소의 건설에 관한 사항
8. 전기공사업체의 육성·지원
9.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협조
10.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전원개발 관계 법령의 운용

⑬ 원자력발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자력발전사업의 홍보·지원
4. 원자력발전의 기술자립 및 표준화계획등 연구개발계획의 수립·추진
5. 원자력발전연료의 확보와 장·단기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신·증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처리·처분의 지원

⑭ 광업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석탄을 제외한 일반광물의 개발육성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 광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3. 광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지원
4. 지하수 및 석·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의 지원
5.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술자금의 지원
6. 광업법 및 광업권 제도의 운용
7. 광산보안법 운용 기타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8. 광산지역의 광해방지·산림복구와 광산지역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9. 대한광업진흥공사와의 업무협조

⑮ 석탄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석탄 및 연탄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의 생산 및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4.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유통·저탄 및 품질관리
5. 석탄산업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
6. 연탄공장의 이전단지화 및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의 업무협조
8. 석탄산업법의 운용

⑯ 각 지원정책심의관은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 13조(산업정책국) ①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배치과·산업환경과·산업유통과·산업기술기획과 및 산업기술개발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및 산업유통과장은 서기관으로, 산업배치과장·산업환경과장·산업기술기획과장 및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공업발전법의 운용
3.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5. 공업발전기금의 운용
6. 금융·내국세·관세 등과 관련된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7. 공업발전심의회 및 산업발전민간협의회와의 업무협조
8. 산업연구원 및 사업자 단체와의 업무협조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배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운용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수도권내의 공업입지 대책 및 공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공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 지원
5. 농공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 및 해외공단의 개발·운용

⑤ 산업환경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계의 자원재활용대책의 수립
3. 공업단지의 산업폐기물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의 운용
5. 환경설비 제조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⑥ 산업유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의 국내외 물류 촉진정책의 수립·추진
2. 공산품의 물류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요 분석·투자 및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3. 공산품의 유통구조 개선 및 관련 유통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4. 공산품의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산품의 선물거래에 관한 사항
6. 공산품의 가격동향 조사·분석 및 물가안정대책의 수립
7. 대한상공회의소 기타 상업단체와의 업무협조

⑦ 산업기술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산업기술개발자금 및 지원제도의 운용
4.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계획의 수립·추진
5. 해외기술투자·기술이전등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산업기술정보의 수입·분석·유통에 관한 사항
7. 산업계의 기술인력 개발 및 양성
8. 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정보원과의 업무협조

⑧ 산업기술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계획의 수립·추진
2. 산업기술의 수요조사 및 기술예측
3. 국제산업기술교역의 촉진
4.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시책 수립
5.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원
7. 산업디자인 포장개발 및 한국생산성본부와의 업무협조

제 14조(중소기업육성) ① 중소기업육성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중소기업정책과장·지도과장 및 지방중소기업과장은 서기관으로, 진흥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중소기업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연도별 육성시책의 수립·조정
2. 중소기업의 자금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7.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운용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운용 및 재원확충을 위한 계획의 수립
3.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합병·법인전환 및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입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진흥복권 발행계획의 수립 및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조
- ⑤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계열화 시책의 수립·추진
  3. 모기업과 수급기업과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 촉진시책의 수립·추진
  5.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6.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애로에 관한 상담 및 지원
  8.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의 운용
  1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협조
- ⑥ 창업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정책의 수립·조정
  2. 창업지원기금의 관리·운용
  3. 창업지원심의회의 운용
  4.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의 운영 및 지도
  5. 중소기업창업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육성
  7.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육성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업무협조
  9. 창업보육센타의 지정 및 육성
  10.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⑦ 지방중소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2.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입지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지원 및 협력
  5. 지방중소기업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 및 산업계·학계·연구소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망중소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15조(기초공업국) ① 기초공업국에 산업기계과·자동차조선과·항공우주공업과·철강금속과 및 기초화학과를 둔다.
- ②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산업기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공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계류 국산화의 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3. 산업기계공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발전설비·토목기계·광산기계·농업기계·화학기계·제지기계·식품가공기계·섬유기계·운반하역기계·공작기계·원동기 및 냉난방등 산업기계(산업설비를 포함한다)공업의 지원·육성
    5. 각종 기계류부품 공업의 지원·육성 및 대단위 기계공장의 건설·육성에 관한 사항
    6. 광학기계·사무용기기등 정밀기계공업과 치공구 및 기계요소 공업의 지원·육성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자동차조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송기계공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수송기계공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촉진에 관한 사항
    3. 수송기계공업의 국제화 추진 및 대외협력의 촉진과 국내의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4. 수송기계 및 그 부품공업의 전문화·계열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이륜차·자전거·철도차량·승강기·지게차·기타 특수자동차와 그 부품공업의 지원·육성
    6. 조선공업·조선기자재공업·해양설비공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조선공업에 관한 국제규범(다자간 조선헌정)의 운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선박·기자재공업의 기술향상 및 기자재공업에 관한 정보·동향분석
  - ⑤ 항공우주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항공우주기기 부품의 국산화 추진 등 항공우주공업의

지원·육성

3. 항공기의 성능·품질검사, 국가간 품질인증 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지원

5. 다목적 실용위성(본체 및 구성품) 개발사업의 지원

6. 방위산업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및 방위산업체의 지원·육성

7. 방위산업시설의 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철강금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공업의 육성정책 수립·지원

2. 비철금속공업의 육성정책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조·단조·도금·열처리·용접·금형공업의 지원·육성

4. 캔테이너·양식기 등 금속가공공업의 지원 육성

5. 벨브·공구·볼트·너트·공업용로 공업의 지원·육성

6. 신금속·복합소재공업의 지원·육성

7. 철강·비철금속공업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⑦ 기초화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기타 유기·무기화학산업의 발전계획의 수립

2. 화학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신물질(중간체, 원제 등)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생물산업의 지원·육성

4. 화학기술자립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공동사업의 조장

5. 화학산업 환경오염방지 및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국제협력

6. 국내외의 화학기술·산업동향 및 통상정보의 조사·분석

7. 기타 기초화학공업의 지원·육성

16조(생활공업국) ① 생활공업국에 섬유소재과·섬유생활공업과·화학공업과·전자기기과·전자부품과 및 전기공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공업이사관, 정보통신이사관, 부이사관, 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섬유소재과장은 섬유생활공업과장 및 화학공업과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전자기기과장은 전자부품과장 및 전기공업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섬유소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산업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의 수립·추진

2. 화학섬유, 방직산업 및 염색가공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섬유산업의 진흥 및 해외투자진출의 적정화등에 관한 사항

4. 직물공업합리화 및 부직포, 카페트 산업의 진흥

5. 염색가공업의 집산화 및 공동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6. 협업화 및 산·학·연협력 촉진

7. 섬유관련 국제협력 및 대응방안의 수립·추진

8. 국내외 산업 및 시장동향의 조사분석

9.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섬유생활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류, 의류 부자재, 신발, 가방, 피혁 및 혁제품·완구·운동구·가구·문구·보석 및 귀금속·악기·공예·가발·우산 및 양산 등 기타 섬유생활 제품과 패션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의류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패션산업의 진흥

3. 의류 등 기타 섬유제품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섬유제품의 물류자동화 및 정보화 추진

5. 신발·원구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사항

6. 자기상표 개발, 해외마케팅 및 일류화의 사업지원

7. 업종별 전용단지의 조성 및 공동연구시설의 확보를 통한 생산 및 내수기반의 확충

8. 산업피해의 예방 및 구제 지원

⑤ 화학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료·염료·안료·도료·잉크·향료·계면활성제·비누·세제·접착제 및 촉매 등 정밀화학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염산업의 구조조정 및 염관리법의 운용

3. 타이어·고무·합성수지제품·제당·조미료·펄프·제지·인쇄공업의 지원·육성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 파인세라믹·시멘트 및 등제품·연마제품·도자기·내화물 및 점토벽돌·탄소 및 흑연제품·유리 및 제품산업의 지원·육성

6. 합성수지제 건축자재 및 복합신소재 공업의 지원·육성

7. 페프라스틱·페타이어·페지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생물산업의 지원·육성
- ⑥ 전자기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전기기기산업의 지도·육성
  2. 산업정보화의 촉진·지원
  3.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4. 시계·자동판매기·의료기기산업의 지원·육성
  5. 전자게임기기 산업의 지원·육성
  6. 기타 전자·전기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⑦ 전자부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전기기기관련 부품산업의 지도·육성
  2. 반도체 소자·재료산업의 지원·육성
  3.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의 지원·육성
  4.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원·육성
  5. 영상기기·음향기기 및 동 부품산업의 지원·육성
  6.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7. 전지산업 및 기록매체산업의 지원·육성
- ⑧ 전기공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공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가정형 전기기기산업의 지원·육성
  3. 발전기 및 전동력 응용기기산업의 지원·육성
  4. 발전·송전·배전·변전 관련기기 및 관련 시스템산업의 지원·육성
  5. 사무·가사·공장자동화기기 산업과 제어·계측기기산업의 지원·육성
  6. 전력전자기기·전기열변환이용기기산업의 지원·육성
  7. 조명기기·전선산업의 지원·육성

### 제3장 광업등록사무소

- 제 17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 18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 19조(하부조직) ① 사무소에 등록과·조사과 및 처분과를 둔다.  
 ② 등록과장 및 처분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자원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자원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 20조(공무원의 정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

표 2와 같다.

- 제 21조(등록과) 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인사·사무·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 22조(조사과) 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실지조사 및 광상설명서의 검토
  2.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3. 광구경계의 측량
  4. 광구도의 작성
- 제 23조(처분과) 처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지역등의 결성·고시
  4.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5. 광업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 제4장 수출자유지역관리소

- 제 24조(직무) 수출자유지역관리소(이하“관리소”라 한다)는 관할 수출자유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 25조(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제 26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 27조(하부조직) 관리소에 관리과·사업과 및 운영과를 두고, 소장 밑에 투자홍보담당관(이리관리소를 제외한다)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제 28조(공무원의 정원) 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 29조(투자홍보담당관) ① 투자홍보담당관은 5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투자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1. 투자유치의 홍보
2. 관할 수출자유지역의 안내

제 30조(비상계획담당관)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에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실시
5.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 31조(관리과) ①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표준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수출자유지역안의 지원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관할 수출자유지역안의 경비
12.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
13.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32조(사업과) ① 사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주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2. 외국인 투자인가신청에 관한 사항
3. 기술도입신청에 관한 사항

4. 토지·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 허가에 관한 사항
5.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제 33조(운영과) ① 운영과장은 건축사무관·토목사무관·전기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 또는 섬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2. 수출입의 검사
3. 외국인 투자인가에 따른 기술검토
4.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관할수출자유지역외의 일시적 반출에 관한 사항
6. 기능직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직업훈련업무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기타 시설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감독
10. 항만의 보수 및 유지관리(이리관리소를 제외한다)

## 제5장 광산보안사무소

제 34조(광산보안사무소) ① 광산보안사무소는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광산보안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기타 인사관리등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광산보안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⑤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용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